

울산지방법원 2023. 9. 6 선고 2022가단742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자산관리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7. 12.

판 결 선 고 2023. 9. 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9. 2. 2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,150,285원의 범위 안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150,2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,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, 갑 제1 내지 3,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.

가. D단체는 2017. 12. 5. C에게 만기를 2018. 7. 24.로 정하여 대출을 하였다.나. C의 아버지 E는 2019. 2. 6. 사망하였다. 사망 당시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. E의 상속인으로는 C 외에 C의 오빠인 피고가 있다.

다. 피고는 2019. 2. 6. C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. 이에 따라 피고는 2019. 2. 26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2. 6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C은 2019. 3. 27. D단체 대출금을 연체하였고, 그 연체금은 잔여 원금 2,073,70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. D단체는 2021. 9. 9.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.

마. 원고는 2021. 11. 18.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라.항의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(2021차전4999)을 신청하였다. 위 법원은 2021. 11. 19. 「C은 원고에게 3,174,832원과 그 중 2,073,701원에 대하여 2021. 11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」는 지급명령을 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22. 3. 8. 확정되었다.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C은 2019. 2. 6.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소극재산은 금융권 채무 등 합계 40,013,000원이 있었던 반면, 적극재산은 F의 G보험(무해지환급형) 1형(무해지환급형) 보험뿐이었는데, 그러한 상태에서 상속 개시 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한

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,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.

한편, 원고의 2023. 6. 1. 기준 피보전채권액은 3,686,610원[= 제1항(기초사실)의 마.의 원금 2,073,701원 + 이자 1,612,909원]과 6,463,675원(= 대출원금 3,024,874원 + 비용 956,990원 + 이자 2,481,811원)을 더한 10,150,285원이다.

그런데,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C의 상속 지분 전부로 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9,500만 원의

절반인 4,750만 원 상당의 반환을 명하게 되어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,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로 지분을 한정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,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범위 안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.

따라서,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2. 26.1)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,150,285원의 범위 안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0,150,2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에게서 이탈된 재산을 사해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고,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한다. 예컨대, 수익자가 채무자에게서 사해행위에 따라 취득한 물건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를 들 수 있고,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사해행위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, 또는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도, 수익자가 목적물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거나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. 그 외에 대표적인 경우로는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, 그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있다.

2)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의 상속지분은 2분의 1로서 피고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.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예정에 있고, 이러한 말소등기는 가능하다. 나아가, 이 사건 부동산이 멸실·훼손되었다거나,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에 다른 전득자가 소유권을

이전받았다거나 제3자가 제한물권을 설정받았다는 증거가 없고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존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.

3) 이와 달리,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이준영

별지 목록

1동의 건물의 표시

울산광역시 남구 [] [] 동

[도로명 주소]

울산광역시 북구 []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[] 철근콘크리트조 10층 73.395㎡

대지권의 표시

1. 울산광역시 북구 [] 대 10802㎡

2. 울산광역시 북구 [] 대 22㎡

1. 2 소유권 대지권 10824000분의 28437

1)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나 그 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(위임장) 내용에 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을 2019. 2. 26.이라고 주장하면서도,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이 2019. 2. 6.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(이 사건 2023. 6. 2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쪽 참조).